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의 안 변 호	3144
------------	------

제안년월일 : 2025년 9월 10일

제 안 자 : 윤 영 위 원 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5.5.20., 공포 및 시행) 사항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내 신규 직위(3급) 신설과, 이를 반영한 하부조직 개편('25.7.4.)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의정국장 산하 하부조직 명칭 '담당관' → '과'로 일괄 조정)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 및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내 신규 직위 신설과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입법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의정담당관”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정분석담당관으”를 “재정분석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분석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의정담당관”을 각각 “운영지원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제2조 관련)

현행	개정안
제2조(의원해외활동운영협의회) ① ~ ③ (생략) ④ 운영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의정담당관</u> 이 된다. ⑤ (생략)	제2조(의원해외활동운영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운영지원과장</u> -----.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제3조 관련)

현행	개정안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총괄지원부서는 <u>재정분석담당관</u> 으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 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제5조(관리) ① ----- ----- <u>재정분석과</u> ----- ----- ----- -----.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부 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 론회 등 : <u>재정분석담당관</u>	3. ----- ----- ----- <u>재정분석과</u>
4. 신청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 현 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u>의정</u> <u>담당관</u>	4. ----- ----- <u>운</u> <u>영지원과</u>
5. 교섭단체가 제안하는 현안사항 에 대한 토론회 등 : <u>의정담당관</u>	5. ----- ----- <u>운영지원과</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